

헝가리, EU 기준에 맞춘 조세감면 제도 추진

□ 기존 조세감면 인센티브 유지키로 EU와 합의

- 헝가리 등 중·동구 8개국의 EU 가입이 최종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헝가리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기존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유지하는데 EU 집행위와 최종 합의하였음. 이번에 논의된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헝가리 정부가 FDI 유치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일정 조건¹⁾을 충족시키는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2011년까지 동 혜택이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EU 집행위는 동 제도가 EU의 시장경쟁 기준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2001년 1월까지 소급하여 부여된 혜택도 취소시킬 것을 헝가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음. 이에 대해 조세감면 자격을 부여받은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동 혜택이 취소될 경우 투자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으며, 헝가리 정부도 EU 집행위에 대해 既 부여 혜택을 철회하는 것은 反헌법적 조치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 EU 집행위가 소급취소 요구를 철회하고 동 인센티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중 1,200억 포린트(약 5.2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들도 부여받은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게 되었음.
- 양자간 동 조세감면 인센티브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97년 이후 2003년 1월 1일까지 적법하게 인센티브 자격을 부여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간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임. 따라서 투자를 약정하고 투자실행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들은

1) 100억 포린트(약 4,000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투자 또는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며 고용창출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30억 포린트 이상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 전액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

인센티브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함.

-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을 확보한 기업은 75%의 조세감면비율²⁾을, 2000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중 자격을 확보한 기업은 50%의 감면비율을 한도로 함. 단, 민감분야(헝가리의 경우 자동차 산업임)의 조세감면 비율은 각각 30%와 20%를 한도로 함.
- 이번 EU와의 합의는 48개 거대 외국인투자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 헝가리에 총 108.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헝가리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음. 이번 새로운 합의로 48개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은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나, 업계에서는 강경했던 EU 입장이 완화된 내용으로 최종 합의된 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감면조치도 연장

또한 헝가리 정부는 지방세 감면혜택 인센티브를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EU와 최종 합의하였음. 이 조치는 약 100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 상기 48개 기업은 배제되었음.

□ 관계사 내부거래 관련 소득세 감면법안 제출

- 한편, 지난해 12월 헝가리 재무부는 헝가리 기업이 관련된 관계회사간 로열티 또는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동 법안은 헝가리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함과 아울러 EU 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04년이나 2005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동 법안은 관계회사간 로열티 소득의 5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고, 관계회사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도 5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2) 1997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기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2003년 1월 1일부터 인센티브 소멸시점(2011년)까지의 조세감면액 비율.

차감함으로써 헝가리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단, 로열티 소득 차감은 헝가리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 또는 국외 관계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자수입 차감은 헝가리에 소재한 기업이 대주(貸主)인 경우에만 적용됨. 또한, 관계회사간 로열티 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규모는 해당 헝가리 기업 세전(稅前) 이익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